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04~55
----------	---------

제출일자	2004. 11.
제출자	거창군수

□ 제정사유

- 2004년 6월 소방방재청 신설과 함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년 3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 (안 제2조 및 제3조)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함.
 - 기 능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문화운동 심의, 재난관리업무 조정
- 안전대책위원회 임기 (안 제4조)
 -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안전대책위원회 회의 (안 제6조)
 -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

□ 제정근거

- 조례 준칙 안 시달 : 도 치수관리과-6650(2004.6.21)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제4항
- 지방자치법 제15조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부군수
2. 거창경찰서장
3. 거창소방서장
4. 육군 제8962부대 제6대대장
5. 거창교육청 교육장
6. 기획감사실장
7. 경제과장
8. 건설과장
9. 지역개발과장
10.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장
11. KT진주지사 거창지점장
12. 한국전기안전공사 거창지점장

② 위원장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군내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4조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위원회실 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거창군안전대책위원회및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거창군안전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안전대책위원회및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